

학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장로교 표준에 입각하여 성경적인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대한 신학의 심오한 이론탐구와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와 교회 발전에 헌신하는 목회자와 신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본교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② 본교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에 둔다.

제3조(과정) ① 본교는 전문대학원으로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학석사(Th.M.)과정, 문학석사(M.A.)과정 그리고 철학박사(Ph.D.)과정과 연구과정(Diploma)을 둘 수 있다.

② 신학 연구 과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및 학생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과정	학과	학위명	입학 정원
석사	신학과	목회학석사(M.Div.)	40명(주,야간)
		신학석사(Th.M.)	
		성경주해(Th.M.)	
		문학석사(M.A.)	
박사	신학과	철학박사(Ph.D.)	5명

제5조(수업) 본교의 수업은 1부(주간)와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하며 계절제 수업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학기 외 기간 중 어학 강좌(히브리어, 헬라어)를 개설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6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28일)이내로 한다.

제6조의2(입학관리위원회) ① 본교 입학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학관리위원회 규정(6-0-13)"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입학허가) 입학허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본교 학위과정에는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성경주해(Th.M)과정, 문학석사(M.A.)과정 그리고 철학박사(Ph.D.)과정을 둔다. 문학석사(M.A.)과정에는 성경, 조직, 선교, 상담, 사회복지(아동복지 포함) 전공을 둔다.

제6조의4(입학취소)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거나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의 5(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된 자라야 한다.

- ① 목회학석사(M.Div.)과정: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② 신학석사(Th.M.)과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목회학석사(M.Div.)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에서 신학관련 문학석사(M.A.)학위를 취득한 자(2022.04.14. 개정).
 - ③ 문학석사(M.A.)과정: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④ 철학박사(Ph.D.)과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목회학석사(M.Div.)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신학석사(Th.M.) 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022.04.14. 개정).
 2. 상담학 문학석사(M.A.) 학위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단, 동일과정에만 지원할 수 있다.(2022.04.14. 개정).
 -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제7조(편입학) ① 본교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②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시행세칙(4-1-4)”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의 2(재입학) ① 본교에 재적하였던 자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총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 원서
 2. 학적 증명서
 3. 성적 증명서
- ③ 재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입학자의 입학 시기는 입학 시기와 같고, 재학 연한은 제16조 수업 연한으로 한다.
 - ⑤ 재입학자의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격(종합)시험과 어학시험은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입학전형) 본교의 입학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상황에 따라 일부분만 시행할 수도 있다.

- ① M.Div.과정

- 가. 서류전형 : 지원자격의 적합성 판정
- 나. 구술시험 : 신학연구의 능력, 적성, 인격 등의 심사
- 다. 필요 시, 성경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Th.M.과정

- 가. 서류전형 : 지원자격의 적합성 판정
- 나. 구술시험 : 전공분야 학문에 대한 지식, 연구능력, 적성 등의 심사
- 다. 필요시 전공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M.A.과정

- 가. 서류전형 : 지원자격의 적합성 판정
- 나. 구술시험 : 전공분야 학문에 대한 지식. 연구능력, 작성 등의 심사

④ Ph.D.과정

- 가. 서류전형 : 지원자격의 적합성 판정
- 나. 필답고사 : 전공과목, 영어(TOEFL(IBT) 61점 이상은 면제)
- 다. 구술시험 : 신학석사(Th.M.) 혹은 문학석사(M.A.) 학위논문에 대한 이해와 전공분야 학문에 대한 지식, 연구 계획에 따른 연구능력, 작성 등을 심사

제9조(입학지원 구비서류) 본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M.Div.과정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대학교(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교(신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외국인: 여권 사본)
-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1부
- 건강진단서 삭제(2022.04.14. 개정)
- 반명함판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매
- 외국인: 한글 TOPIK 3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제출

② Th.M.과정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대학교, 대학원(M.Div.)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대학원(M.Div.)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외국인: 여권 사본)
- 목사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1부
- 건강진단서 삭제(2022.04.14. 개정).
- 반명함판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매
- 외국인: 한글 TOPIK 3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제출

③ M.A.과정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외국인: 여권 사본)
- 목사 추천서(소정양식) 1부(상담, 사회복지 제외)
- 반명함판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매
- 외국인: 한글 TOPIK 3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제출

④ Ph.D.과정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대학교, 대학원(M.Div., Th.M., M.A.)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대학원(M.Div., Th.M., M.A.)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외국인: 여권 사본)
- 석사학위 논문 1부(신학전공 박사과정에 한함)
- 석사학위 논문 요약문(목록, 서론, 내용요약, 결론, 참고문헌) 3부(신학전공 박사과정에 한함)
- 연구계획서(제목(한글, 영문), 목적, 내용, 배경 및 필요성, 방법, 주요문헌)
- 반명함판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매

제10조(외국인학생 및 교원입학) ① (외국인학생의 입학)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입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국인 학생 규정(4-1-5)”에 따른다.

② (교원입학 제한)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조교 제외) 및 직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11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3. 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절학기 시행세칙(4-1-3)”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업) ① 수업 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개교기념일(10월 4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 학습 등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2조의 수업 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4조(입학 및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 전액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서 완료된다.

④ 입학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학 및 등록 시행세칙(4-2-1)”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신청 시행세칙(4-1-11)”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장애학생 학점 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 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학생의 재학 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학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수업, 학점 및 수료

제1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목회학석사(M.Div.): 수업 연한 3년(6학기)으로 하되 재학 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Th.M.과정: 수업 연한 2년(4학기)으로 하되 재학 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문학석사(M.A.): 수업 연한 2년(4학기)으로 하되 재학 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외국인 학생인 경우 재학 연한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④ 철학박사(Ph.D.): 수업 연한 3년(6학기)으로 하되 재학 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과(전공)별 공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단, 성경주해(Th.M.), 성경 및 조직(M.A.)는 필수와 선택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② 학점과 배점 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한다.

③ 교육과정이 확정된 후의 변경사항(과목명의 변경, 학기 조정, 과목의 추가 등)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변경한다.

④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평가 및 개선하여야 하며, 5년 이내의 주기로 학계 및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하고, 개선 및 개발된 교육과정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목의 개설) 각 과정별 교과목 개설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의2(강의시간표) ①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강의 시간은 학생들의 수업효율성에 맞게 요일별로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

③ 공고된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8조의3(강의계획서)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 정해진 기간에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휴강 및 결강) ① 담당교수의 사전 연락 없이 수업시간 15분 후까지 출강하지 않는 교과목은 결강으로 처리한다.

② 학사일정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사정으로 휴·결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강 후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해 학기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실시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

제18조의5(출강) 본교 전임교원의 타 기관 출강은 매 학기 중 해당 교수 연구일에 한하며, 학기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선수 교육) 전공과목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에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수강과목의 선택) 수강 과목의 선택은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정수료 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22조(성적 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성적평가 시행세칙(4-1-9)”으로 따로 정한다.

등급	평점	배점
A+	4.3	100-97
A0	4.0	96-94
A-	3.7	93-90
B+	3.3	89-87
B0	3.0	86-84
B-	2.7	83-80
C+	2.3	79-77
C0	2.0	76-74
C-	1.7	73-70
F	0	0-69
P	불계	Pass
NP	0	Non-Pass

제22조의2(장애 학생 평가) 장애 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제22조의3(수업만족도 평가) ① 수업만족도 평가는 당해학기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 경건회 등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아니한 강좌는 제외한다.

② 평가시기는 매학기 종강 또는 기말고사 실시 2주전부터 성적열람기한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수강학생이 본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미응답자는 해당학기 성적열람을 할 수 없다.

④ 평가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개선 및 각종 평가에 적극 활용한다.

⑤ 수업만족도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만족도평가 규정(4-1-13)”에서 따로 정한다.

제23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매학기 목회학석사(M.Div.)과정은 18학점, 신학석사(Th.M.)과정은 9학점, 문학석사(M.A.)과정은 9학점, 철학박사(Ph.D.)과정은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최종학년은 예외로 하며, 선수(필수 특정과목)과목 이수 해당자에 한하여 학기당 12학점 까지 이수할 수 있다(목회학석사 과정은 제외)

③ 학생이 졸업을 위해 취득해야 할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과정	학점	논문	비고
목회학석사(M.Div.)	96학점 이상		종합시험, 성경시험 및 경건회
신학석사(Th.M.)	30학점 이상	필수 (6학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2022.09.02. 개정)
성경주해(Th.M.)	30학점 이상[6학점(논문대체2과목)] (2022.09.02. 개정)	선택 (6학점) (2022.09.02. 개정)	종합시험 (2021.08.26. 개정)
문학석사(M.A.)	30학점 이상 [6학점(논문대체2과목)] (2022.09.02. 개정)	선택 (6학점) (2022.09.02. 개정)	종합시험 (2021.08.26. 개정)
	30학점 이상 [6학점(논문대체2과목)] (2022.09.02. 개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2022.09.02. 개정)
	36학점 이상 [6학점(논문대체2과목)] (2022.09.02. 개정)		
철학박사(Ph.D.)	42학점 이상	필수 (6학점) (2022.09.02. 개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2022.09.02. 개정)

④ 목회학석사(M.Div.) 과정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목회학석사 과정은 9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기초(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필수학점은 최소 60학점 이상, 선택학점은 최소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졸업학기(정기졸업 및 후기졸업), 장애학생과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12학점 미만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⑤ 성경주해 전공(Th.M., Ph.D.)의 경우는 필수와 선택 구분 없이 각각 전공 30학점과 전공 42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며, 신학석사 과정의 성경주해 전공은 논문을 학점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02.27)

⑦ 원격교육(위성, 인터넷, PC통신)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상교육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학점 인정) 학점 인정은 강의시간 13주 이상 출석을 하고 시험성적은 학업성적 평가 기준에 준한다.

제24조의2(장애 학생 수업 지원) ①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지원을 위하여 장애 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애 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요청 사항을 물어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25조(등록) ① 정규등록: 수업 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 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② 입학 등록, 편입학 등록, 재입학 등록: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③ 논문등록: 수료 후 논문 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④ 연구등록: 수료 후 논문 세미나의 수강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어 시험 또는 종합 시험에 응

시하거나 교내 제반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⑤ 연구생등록: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

⑥ 교과목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등록학생은 위의 전 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수학 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해야 한다.

⑧ 소요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학적 보유비)을 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한 금액은 법령에 의한 경우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6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28일)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학기 8주 이내에 휴학신청서를 구체적인 사유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도교수, 교무학생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② 8주를 초과하여 휴학신청을 할 경우 휴학할 수 없으나, 군입대 휴학, 육아휴학,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 하되, 군입대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육아휴학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④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 납부한 분납금은 보존하되, 복학할 경우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미납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⑥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⑦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종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7조(복학) ① 제26조에 의한 휴학자의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 소멸 시에는 등록기간 내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3주(21일)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신청서와 지도교수 소견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제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4주(28일) 이내(병역의무를 필하고 전역한 자는 1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성적불량, 신체 허약 등으로 학업 성취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된 자

4.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성의 한 자

5.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 재학연한 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타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자

8.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학업을 방해하는 자

9.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전공의 변경

- 제30조(전공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확정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변경시행세칙(4-1-15)”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자격(종합) 시험

- 제31조(자격 시험)**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해 자격(종합) 시험을 부과한다.
- 제32조(자격시험 응시)** ① Th.M. 및 M.A. 2학기 이상 수료자는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종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Ph.D.과정 3학기 이상 수료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종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자격(종합)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종합)시험 시행세칙(4-1-8)”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위 논문

- 제33조(세부사항)** 학위논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 시행세칙(4-1-6)”으로 따로 정한다.
- 제34조(논문 지도교수의 선정)**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이 전공교수와 의논한 후, 전공주임교수와 교무학생처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 제35조(논문 지도교수의 요건)** 논문 지도교수의 요건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학위수여, 논문, 졸업사정, 명예박사

- 제36조(학위수여)** 학위는 제37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양식(1, 2)에 의한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문학석사(M.A.), 철학박사(Ph.D.)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 수여는 1학기, 2학기에 할 수도 있다.
- 제37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9조(졸업사정)** 졸업 대상자에 대한 졸업 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40조(명예박사 학위)** ①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공개강좌, 연구생

- 제41조(공개강좌)** ① 본교는 필요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42조(연구생)** ① 본 학칙 제6조의5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한 후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이 학위 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생의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제6조의5에 준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장학금

- 제43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또는 본 교단 교역자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제44조(수혜 대상자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4-2-2)”에 따른다.

제12장 규율과 상별

- 제45조(포상)**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특히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46조(규율)** 학생은 기독신자로서 신앙의 성장에 힘쓰고, 경건하며, 단정한 생활태도를 잃지 말며 전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독인으로서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이고 학칙을 준수하며, 장래 교회·국가 및 인류사회에 성실한 봉사자와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47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교무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8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비성경적 교리를 신봉하거나 선전하는 자

2. 학생 상호간의 폭행 및 구타,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피해가 현저하게 드러난 자
 3. 학교 비품을 파손하거나 또는 절취한 자
 4. 각종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5.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예배, 학교행사 및 수업에 빠지거나 방해하는 자
 7. 타 학생의 재산에 손해를 준 자,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준 자
 8. 이성간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
 9. 기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② 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3장 원우회 등 설치 승인 및 운영과 활동

제49조(학생 단체 조직) 본교 재학생의 모든 활동은 학교의 지도에 따라 시행하되 학생들이 단체(예,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원우회 설치 및 승인)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1) 신앙심과 학풍을 고취하고, 2)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3)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4) 선배동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본교 안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51조(운영과 활동) 원우회의 기본조직,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안과 그 집행 및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학생처의 지도를 받는다.

- ① 학생들은 학내외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 ② 학생들의 모든 집회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학생들의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교무학생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장 직제

제52조(교직원) 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산학협력전담교수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두며,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특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53조(교직원의 임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 ③ 사무직원은 대학의 행정 및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④ 조교는 교육, 학생지도, 학사 및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제54조(직제) ① 본교에 기획행정처, 교무학생처를 두고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대학평의원회

제55조(대학평의원회) ①본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규정(6-0-2)”으로 정한다.

제16장 대학원위원회

제56조(대학원위원회) ①본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규정(6-0-3)”으로 정한다.

제17장 교수회

제57조(교수회)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직무 대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수회는 정기 혹은 임시회로 모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이 부여하는 사안을 자문 및 심의 한다.
④ 교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18장 교무위원회

제58조(교무위원회) ①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6-0-4)”으로 정한다.

제19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59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6-0-7)”으로 정한다.

제20장 입학관리위원회

- 제60조(입학관리위원회)** ① 본교 입학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학관리위원회 규정(6-0-13)”으로 정한다.

제21장 부속기관

- 제61조(부속기관)** ① 본교에 경건훈련원, 도서관,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원, 성경과 신학연구소, 출판부, 생활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장 보칙

제62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제63조(장애인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다문화가족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1차 개정 학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2차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3차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4차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5차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6차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7차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칙”은 자동 폐기된다.
10. 이 8차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9차 개정 학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23조 ③항은 201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23조 ③항 중 성경언어시험은 201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23조 ③항은 2017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 ③항의 개정사항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양식(1) - 학위기(석사)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석사 (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 ○ ○ (인)	
학위등록번호 _____	

별지양식(2) - 학위기(박사)

박제호	학위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박사 (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Ph.D.)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 ○ ○ (인)	
학위등록번호 _____	